파주시공고 제2026-3088호

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7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2. 개정이유

ㅇ 위원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보장하면서 시정 관련 의견 제시 근거를 마련하고, 위촉 해제 사유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.

ㅇ 추천위원회의 위촉 대상 확대 및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전문성 검토와 성별 균형 참여를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시정 관련 의견 제시 근거 신설(안 제4조제2항)

- 위원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시정 참여 근거 마련

나. 위촉 해제 사유 신설(안 제11조제2항제4호·제5호)

-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가 있는데도 조사 및 심의·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
- 시장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

다. 추천위원회 위촉 자격요건 완화(안 제12조의2제2항제4호)

- 지역대학 추천위원의 자격요건을 기존 교수에서 겸임교원 등으로 확대

라. 추천위원회 위촉 대상 확대(안 제12조의2제2항제6호)

-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추가

4. 자치법규안

○ 파주시 홈페이지(https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: 2026. 12. 17.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팩스·전자우편 등

다. 기재내용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(찬성·반대 여부 및 사유 등)

라. 제출기관: 파주시청 감사관(시민권익팀)

- 주소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, 파주시청 감사관 시민권익팀(우 10930)

- 전화: 031-940-5973 / 팩스: 031-940-4089 / 이메일: toy2206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**자치법규명: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**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　　견	비 고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